

주 재(D-7)

활동범위 및 해당자	<p>1.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의 공공기관,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, 지사, 기타 사업소 등에서 <u>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</u> ◆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, 자회사,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<p>[다만, 기업투자(D-8)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,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<u>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</u> 2) ‘<u>영업자금도입실적‘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’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.</u> <p>2.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장법인(코스닥상장법인 포함, 이하같음)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·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(다만,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)
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3년
공관장 제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	<p>1. 중국인 국내주재지사 등의 주재원(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직원) 및 그 동반가족(F-3)에 대한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</p> <p>첨부서류 :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</p> <p>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 ②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③ 파견명령서</p> <p>▶ 목차</p>

**공관장 재량으로
발급할 수 있는
사증**

- ④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
-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
- ⑤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
(영업자금 도입실적,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, 납세 실적* 등)
*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
으로 납세실적 대체
- ⑥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(이력서, 경력증명서 등)
-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
2.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1년 이하의 단·복수 사증발급

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
- ②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(이력서, 경력증명서 등)
- ③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)
- ④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
- ⑤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
- ⑥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- ⑦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
- ⑧ 인사명령서(파견명령서) :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
-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
3.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·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

■ 자격요건

-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일방 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,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

▶ 목차

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	<p>1.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</p> <p>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(이력서, 경력증명서 등) ④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⑤ 파견명령서 ⑥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⑦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-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, 납세실적*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경우 <u>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</u>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<p>►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</p> <p>※ 출입국 · 외국인정(사무소 · 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 목차	<p>2.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</p> <p>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(이력서, 경력증명서 등) ④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⑥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⑦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⑨ 인사명령서(파견명령서) :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<p>►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</p>

사증발급인정서
발급대상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조청의 진정성, 조청자 및 피조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

3. 한·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

가. 대상자

■ 대표사무소 직원, 회사집단 직원(협정 제2조 가호, 나호 1목)

▶ **대표사무소 직원** : 대한민국의 영역에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(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기업)의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러시아 국민

▶ **회사집단 직원** : 모회사와 회사 설립 문서(정관)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 (지사·지점, 연락사무소, 자회사, 계열회사)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채용된 자

※ 국내채용 직원은 특정활동(E-7) 자격에 해당

첨부서류

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

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

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

④ 납세사실증명

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

-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

⑥ ‘부가가치세법’에 따른 사업자등록증

▶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조청의 진정성, 조청자 및 피조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

4. 한·우즈베키스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

가. 대상자

■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회사 집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국내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(협정 제3조 다호)

▶ 목차

사증발급인정서
발급대상

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
-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
-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
- ④ 납세사실증명
-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
 -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
- ⑥ ‘부가가치세법’에 따른 사업자등록증
→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

5. 한·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

가. 발급대상 : 고용방문자(Employment visitor)

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, 임원,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

(예시) 기업내 전근자, 계약서비스 공급자*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, 독립전문가* 등

* 계약서비스공급자 : 인도회사(법인)와 우리나라 회사(법인)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

* 독립전문가 : 특정회사(법인)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나.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

체류자격 : 계약내용 및 파견(고용)형태에 따라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연구(E-3), 기술지도 (E-4), 특정활동 (E-7) 등의 자격 부여

사증발급 :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

※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



목차

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	첨부서류	
	공통	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
기업내 전근자		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
계약서비스 공급자 (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)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		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,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(기관)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
독립전문가 (an independent professionals)		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, 관련 분야 자격증,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
<p>▶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</p> <p>※ 출입국 · 외국인청(사무소 · 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		

6. 「외국법자문사법」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사증발급

가.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*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**

*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등 임원급을 의미

**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(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3호)

첨부서류	
	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(대한변호사협회 발행, 법 제18조)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(외국환은행 발행) 및 사업자등록증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⑤ 파견명령서 (본사발행, 파견기간 명시) ⑥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(대한변호사협회 발행, 법 10조)

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

- ※ 1년 이상 본사 근무요건이 면제되므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불요
- ▶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

나. 외국법인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

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
- ② 외국법인문법률사무소 등록증 (대한변호사협회 발행, 법 제18조)
-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(외국환은행 발행) 및 사업자등록증
-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
- ⑤ 파견명령서 (본사발행, 파견기간 명시)
- ⑥ 경력증명서 (본사1년 이상 근무요건 충족 여부 확인)

- ▶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

참고사항

1.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

□ 외국은행의 지점·대리점

- 외국은행 :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
-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·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(은행법 제 58조, 2010.5.17 개정)

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

- 외국 금융투자업자 :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
-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,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)

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및 국내사무소 설치

-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,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

▶ 목차

참고사항

(“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”)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(보험업법 제12조, 2008.2.29 개정)

-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,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,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.

□ 비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

-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(국내지사라고 함)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(외국환거래규정 제9-32조 및 제 9-33조)

- 비거주자의 지점 :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
- 비거주자의 사무소 :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, 시장조사,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

※ 자금의 융자,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, 카드업무,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,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,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

▣ 필수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

※ 필수전문인력의 범위

유 형	해 당 범 위
임 원 (EXECUTIVE)	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,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· 감독만을 받는 자(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)
상급관리자 (SENIOR)	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· 지휘 ·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

▶ **목차**

참고사항

	<p>MANAGER)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, 다른 감독직·전문직·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·감독·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(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)</p> <p>전 문 가 (SPECIALIST)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·설계·기술·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</p>
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의 범위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회사(C)가 해외에 자회사(A)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(B)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- 또는 해외에 있는 회사(C)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(A & B)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	
2.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	
<p>본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장법인·코스닥상장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일 것 <p>*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(http://www.krx.co.kr/)에서 확인</p> <p>해외지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사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지사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점으로 구분 <p>* 현지법인은 본사가 해외 직접투자한 법인을, 해외지점은 본사가 독립 재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해외 영업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 설립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한 지점을 의미하며, <u>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, 시장조사, 연구개발 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는 제외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지사의 규모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 <p>* 현지법인 :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</p> <p>* 해외지점 :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기금(설치비, 유지운영비,</p>	

▶ 목차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전자금 등)을 지급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기관은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치 아니함 ■ 사증발급 신청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• 전문지식 · 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 •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을 대상 • 해당자는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- 본사로 기간을 정하여 파견되는 경우일 것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>Q.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란?</p> <p>A. 해외에 있는 한 자회사(A)와 국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(B)가 동일한 모회사(C)를 가지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며, 이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한 자도 주재(D-7)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말한다. 계열회사간 전근 직원의 주재(D-7) 체류자격은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</p> </div>
--	---

▶ 목차